

#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

2022. 7. 20.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7월 20일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의결 제201~222호, 제224호, 보고 제39~43호)

김 소 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4차 및 임시 제8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2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4차 및 임시 제8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  
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201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반영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02호 『기전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3호 『티에스텍(주)의 [개별,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  
관계자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4호 『(주)프로텍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감사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음. 지정감사인 제도를 하고 있고 IFRS 하면서 표준감사시간도 대폭 늘렸고, 그래서 회계법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의(favor)가 주어진 것도 사실인데 책임법에서 수입료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과거에 미국에서 엔론이 2조 4,000억 원 분식회계를 하면서 회사가 망했고 회계법인 또한 망했던 사례를 고민해보는다면 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검토 소위원회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정례회의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림.
- (위원)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5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직원 1인 견책 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6호 『키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키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임원 1인 주의 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7호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8호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신용정보(주)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손자회사를 편하게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산업 자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수평적 체제를 가지라고 요구해서 손자회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금융 쪽도 그런 체제를 바꾸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 두 번째는 대부업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최고이자를 초과하면 굉장히 강한 규제가 가해짐. 신한카드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이유도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보이는데, 큰 여신전문회사의 경우는 제재의 양정을 조금 더 은행처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주의나 경고와 같은 것들이 양정기준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래에 있는 지주회사의 구성원들을 수평적으로 늘려서 지주회사의 부담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수직적으로 더 좁혀서 자본의 흐름이 물 흐르듯이 흘러서 자본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됨.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지주회사도 무한정 자회사를 손자, 손손회사, 자손회사를 늘릴 수 없지 않은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무한정 자회사를 만들 수는 없음. 제가 볼 때는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로 갖고 있던 신용정보회사를 신한카드의 자회사로 만든다는 것은 카드사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아서 신한금융지주의 자본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 (보고자) 별도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신한지주가 현금을 받게 되는데, 사실 별도재무제표는 중요하지 않고 연결상으로 보면 전과 동일함.
- (위원)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균형감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음.
- (위원) 전체적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
- (위원) 한편으로는 카드와 신용정보의 '업무연관성', 효율적 관리 측면을 금융의 선진화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1999년도에 미국에서 그램-리차-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이 되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금융지주회사 모델을 채택하게 됐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금융그룹에 있어서 자회사 모델이 있었고 금융지주회사 모델이 있는데, 사실은 금융지주회사 모델이 상승효과(synergy effect)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자회사 모델보다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한지주나

우리지주에 대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지만, 지금 신한카드나 신한신용정보(주)의 자회사 편입은 업무연계성도 있고 상승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금융그룹이 앞으로 손자회사까지는 되게 되어 있으니 당연히 자기들의 경영판단에 따라서 상승효과를 부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신한카드의 신한신용정보(주) 모델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

- (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금산분리나 은산분리 이슈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 사실 이것이 중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위원님들 하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덜 고민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음.
- (위원) 지주회사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자본역량을 우리가 판단할 때, 자회사를 수평적으로 많이 늘려놓으면 지주회사는 모든 자회사에 대해서 자본적인 부담을 갖게 됨. 대주주 변경 전에는 신용정보가 잘못되면 지주회사가 돈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대주주 변경으로 신한카드 밑으로 들어가면 신한카드가 여력이 있으니까 완충적인 작용도 하게 되는 것임.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를 수평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직적으로 자본적인 여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임. 지주회사에 대해 당연히 공정 거래법처럼 손자회사만 허용해야 되느냐,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증손·고손도 만들어줘서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사업 분할을 통해서 자본의 효율성이나 업무연관성의 효율성을 좀 더 늘려나가는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 (위원) 해외의 금융지주 회사 형태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인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나름대로 상승효과도 많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듦.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경우에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들을 같이 고려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임.

○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셨으므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정책수립 시에 참고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 위탁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0호 『(주)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굿모닝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이자율 제한 준수 및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전부정지(7.5월)를 조치하되, 허용되는 업무범위에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추심을 추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1호 『20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내용

○ (위원) 지난 13차 안전검토 소위원회 때 추가자본이라는 표현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저자본에 추가를 하는 것이고 이미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추가자본 의무를 1% 부과한다고 하면 추가로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 표현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셨음.

- (보고자)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추가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필요량을 1%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표현이긴 함. 최저수준 자체를 추가하는 것임.
- (위원) 위원님께서서는 추가로 하라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음. 나중에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표현을 정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2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1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1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21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및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내용을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관리기준에 반영하고자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7호 『(주)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미공시’를 근거로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8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9호 『코리아신탁(주)의 코리아프리퍼티(주)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리아신탁(주)의 코리아프리퍼티(주)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0호 『마스틴투자운용(주)의 (주)마스틴에프앤아이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마스틴투자운용(주)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1호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공모 집합투자업 영위를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2호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의 공모 집합투자업 본인가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3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하여 공모규제를 위반한 판매사 ●●●●●●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23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증선위에서 채택한 「채무증권의 같은 증권 판단기준」에 따라, ●●●●●●이 판매한 61개 펀드 중 2개 펀드를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징금 18억 7,57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제재사태인 ☆☆☆☆☆☆☆☆☆前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금융위 소관과와 금감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 본 의결 안건에 대해 재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법원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4호 『팩토리 뮤추얼 인슈런스 컴퍼니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FM글로벌 한국지점에 대해 손해보험업 영위를 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9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승인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법정협회로 승인할 것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0호 『◇◇◇◇◇(주) 등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 등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처리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1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제42호 『표준검사처리기간 경과 검사건 등 보고』, 제43호 『2021.10월~2022.3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위원회 위탁 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1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6분 폐회)